

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고시 제2021-18호, '21.01.31.)

2. 개정사유

-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
- 관리대상화물 선별통보 방식, 검사장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무상 현황을 반영
-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행정 혼란 방지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 (§2, 5, 8, 9)

-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·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 상태로 중량 측정이 가능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운영함에 따라 검사근거와 방법, 대상통보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신설

□ 관리대상화물 교차선별제도 운영에 따른 정의 변경 (§2)

- ‘세관간 교차선별제도(’19. 6월)’ 운영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과 이를 심사하여 선별하는 세관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대상화물 정의 변경

□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 정의 변경 (§2)

- 자유무역지역 내 관리부호를 받을 장소를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검사장소 정의 변경

□ 기타 개정사항

- 타 고시 개정용어 반영 및 근거 규정 및 조항 명확화
- 개정의견 반영 및 기타 문구 정비

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5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없음”

6. 시행 일자 : 2023. 12. . (예정)

7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
- 담당자 : 이승훈 주무관(042-481-7923)
박선경 주무관(042-481-7886)
- 제출방법 : 메모보고 또는 내부메일